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

제정: 2001. 7. 6

개정 : 2002. 4. 18

2003. 4. 8

2007. 1. 2

2008. 1. 18

2011. 2. 25

2014. 5. 1

2016, 9, 1

2021. 8. 18

2021. 10. 1

2022. 1. 28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 정관제19조(기금의 사업) 제2항제2호의 고유목적사업인 "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"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대부금"이라 함은 이 기준에 의거 대부된 생활안정자금을 말한다.
- 2. "대부자"라 함은 이 기준에 의거 대부금을 신청하여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

신청자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에 만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 및 연구위원, 전문위원, 전문직으로 한다. 단, 신청일 현재 급여압류 중인 자와 휴직자, 정년퇴직 2년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. 또한, 사내부부 직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4조(대부금 신청 및 지급)

- ①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한다.
- ② 대부금 신청은 매분기 내 신청하며(대출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), 기금은 필요시 자금용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. 28>
- ③ 대부자와 대부금액은 신청자중에서 긴급성, 우선순위, 가용재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금의 공동대표이사가 결정하되 필요에 따라 대부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대부금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 2인과 대표이사 2인이 각 2인씩 지명하여 총 6인으로 구성한다.
- ⑤ 대부금은 매분기 중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조정지급 가능하다.

제5조(대부한도액 및 대부기간)

- ① 대부한도액은 2,000만원으로 하며, 대부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.
- ②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부금은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되 대부 다음 달 급여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급여에서 공제한다 (단, 정년퇴직 5년 미만인 경우의 대부기간은 정년퇴직일 이내로 한다).

제6조(대부금 이자)

- ① 대부금의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'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(분기별로 연동)'를 적용하며, 연체이자율은 연15%를 적용한다.
- ② 금리 적용시점은 직전 분기분 발표 후 익월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.

제7조(채무보증)

- ① 대부자는 대부금의 채무보증을 위해서 채무상환이행각서(별지 제2호서식)와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'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(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)'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활안정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퇴직연금 담보 설정액이 대부금에 미달 시 보증보험증권을 부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능하며, 대부 후

확정기여형(DC형)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2. 1. 28]

제7조의2(질권실행 협조)

-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부한 경우 공사가 갖는 질권의 권한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변제되지 아니한 대부액에 대한 질권 실행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2. 1. 28]

제8조(대부금 회수)

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즉시 회수한다.

- 1. 대부자가 퇴직하거나 면직된 경우
- 2. 기타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추가대부 및 재대부)

- ① 대부기간중의 추가대부는 제5조제1항의 한도액에서 기존의 대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대부할 수 있다.
- ② 대부자가 대부금 잔액을 전액 상환한 후에는 재대부할 수 있다.

제10조(비용부담)

대부신청 및 실행, 대부금 상환시 소요되는 비용과 기금이 대부자에 대한 권리행사나 보전 또는 보증보험증권, 퇴직연금에 의한 대부금 상환 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대부자가 부담한다. <개정 2022. 1. 28>

제11조(보칙)

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거나 기금 공동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른다.

\Box	ㅜ
=	

이 기준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생활안정자금 대출계약서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"갑"이라 한다)은(이히 "을"이라 한다)와 다음과 같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.
제 1 조【대출 목적 】 ① "을"은 다음의 필요(v체크)에 의하여 "갑"에게 대출을 요청한다.
□ "을" 또는 "을"의 배우자,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ㅎ 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하여
□ "을" 또는 "을"의 배우자,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 또는 장려 비를 위하여
□ 그 밖에 "을"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② "갑"은 대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"을"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"을"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2 조【대출액 및 이자 】 ① "갑"은 "을"이 필요한 대출액 일금원정 (₩ 을 대출하기로 한다.

제 3 조【채무보증】

기간의 만료일은 퇴사일로 한다.

은 연 15%를 적용한다.

① "을"은 채무보증을 위하여 "갑"의 대부기준 제7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대출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

③ 제1항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은행가계대출금리를 적용하며, 연체이자율

한다. 다만, 제3조에 따라 퇴직연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한 경우 대출

② "을"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"갑"을 대신하여 "을"이 가입한 퇴직연금 의 질권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4 조 [준용]

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갑"의 대부기준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5조【관할법원】

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갑) 주 소: (을) 주 소:

회 사 명 : 생년월일 :

대 표 자 : (인) 성 명 : (인)

연 락 처 : 연 락 처 :

(별지 제2호)

생활안정자금 채무상환이행각서

소 속: 직 위: 성 명:

대부금	일금		원정 (₩)
대부기간	년	월	일 ~	년	월	일

본인은 (재)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함)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음에 있어

- 1. 기금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을 준수하고 대부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의 조치 및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- 2. 대부금 상환사유 발생시 급여(퇴직금 포함)에서 우선 상환하며, 상환지체 기간동안 대부기준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부담하겠습니다.
- 3. 대부금 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판상 또는 기타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.

본인은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각서인: (인)

(재)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귀중